

---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 무 편 램

---

2022. 7.

# ■ ■ ■ ■ 목 차 ■ ■ ■ ■

제1편 공시제도 개요 .....	2
제1절 공시제도 개요 .....	2
1. 공시목적 .....	2
2. 법적근거 .....	2
3. 공시 범위 .....	2
4. 공시 대상 .....	3
5. 공시 절차 .....	3
제2절 조사항목 및 공시항목 .....	6
1. 조사항목 .....	6
2. 공시항목 .....	7
3. 공시체계 .....	8
제3절 평가 및 배점방법 .....	9
1. 용어의 정의 .....	9
2. 평가 원칙 .....	10
3. 평가 방법 및 평점 방법 .....	11
4. 감점 사항 .....	13
제2편 공시항목 및 평가기준 .....	15
제1절 공시항목 및 배점 .....	15
제2절 세부평가기준 .....	16
1. 교통안전관리 부문 세부평가기준 .....	16
2. 교통안전실태 부문 세부평가기준 .....	24
제3절 공시등급 .....	27
별지양식 .....	29



## 공시제도 개요

## 제1절

## 공시제도 개요

### 1. 공시목적

- 국민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여객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교통안전 관리 추진
- 본 사무편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및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137호에 따라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 3. 공시범위

- 시간적 범위
  - 공시주기 : 1년에 2회(매년 2월과 8월)
  - 공시할 교통안전정보 평가항목의 시간적 범위
    - \* 2월 공시 :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실적
    - \* 8월 공시 : 해당년도 상반기(1월~6월) 실적
- 공간적 범위
  - 전세버스가 운행하는 전국

○ 내용적 범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에서 정한 사항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137호)에서 정한 사항

#### 4. 공시대상

○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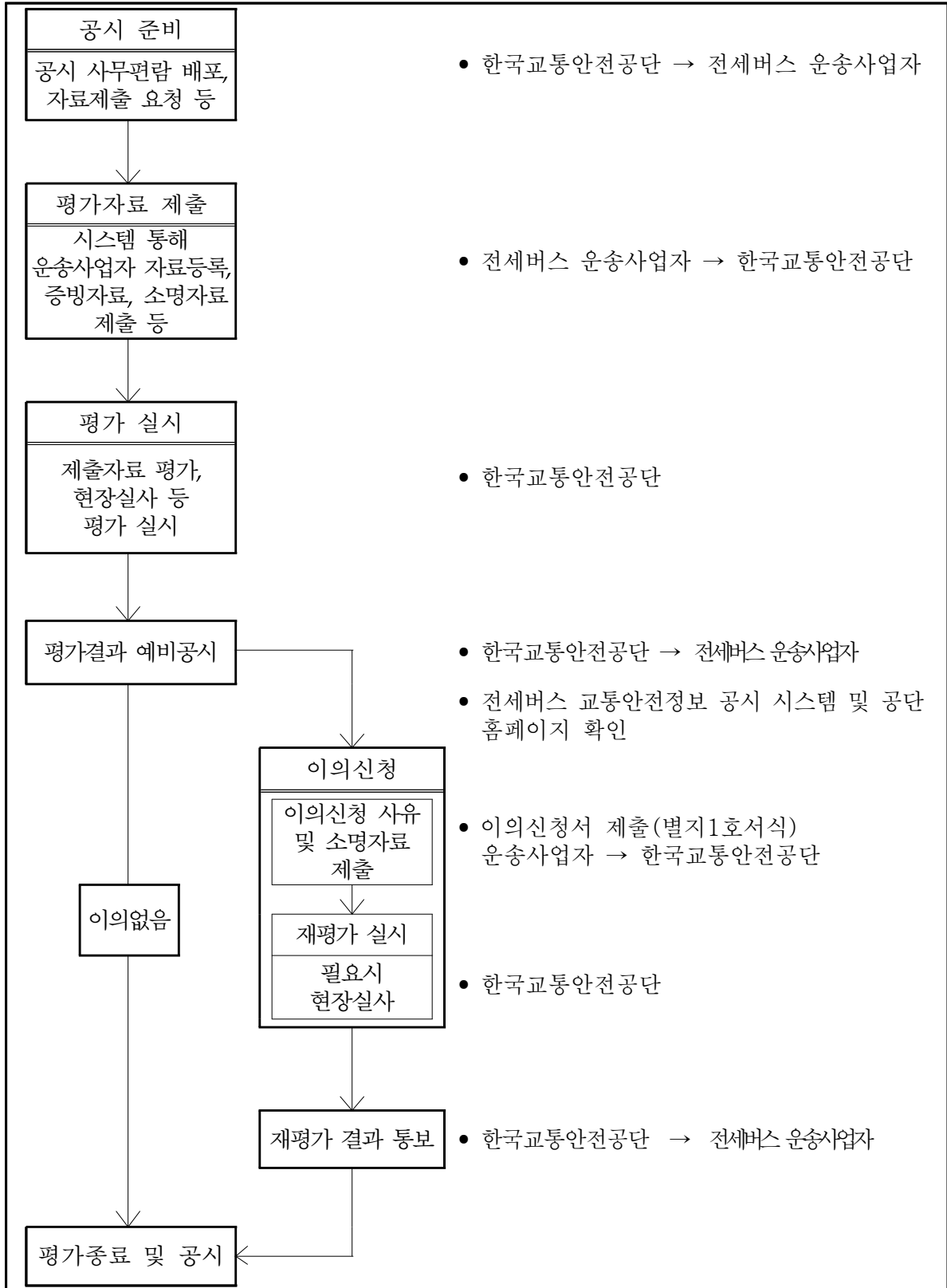
- 영업소의 경우 본사와 통합된 정보를 공시
  - \* 이의신청 만료일까지 참여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공시 불응으로 평가
- 주식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등 모든 운영형태 포함
- 본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법인 사업자별로 공시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운송사업자
  - \* 다만, 6개월 미만이라도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평가기관의 승인에 의해 평가 가능

#### 5. 공시절차

- 공시의 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평가수행 단계, 공시완료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준비단계) 공시 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137호) 제7조에 따라서 공시 사무편람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회를 개최하고, 공시시행 계획에 대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지자체 등에 알리는 단계
  - (평가수행단계) 운송사업자와 유관기관에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정보를 요청 및 공시 시스템에 입력(제출)토록하고, 공시 수행기관은 이를 검증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점수를 산출하는 단계
  - (공시완료단계) 공시항목별로 산출된 점수를 합산한 업체별 종합점수와 등급을 운송사업자에게 예비공시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서, 최종확정된 점수와 등급을 공시하는 단계
- 세부적인 단계별 주요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공시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수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시 사무편람 관련 의견수렴회</li> </ul> </li> <li>○ 공시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지역본부, 운송사업자, 지자체</li> <li>- ‘20년부터는 홍보자료/공문/시스템 이용하여 알림</li> </ul> </li> <li>○ 공시시행 통보 공문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2월, (하반기)8월</li> </ul> </li> <li>○ 평가대상 운송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활용</li> </ul> </li> </ul>	<p>(상) ~매년 2월 (하) ~매년 8월</p>
평가수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등록요청(운수사업자,~1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등록 매뉴얼 배포</li> <li>- 평가시스템 자료등록 요청</li> </ul> </li> <li>○ 지역본부 현장실사 협조요청(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별 실사계획 송부요청</li> </ul> </li> <li>○ 업체등록자료 및 공단시스템 수집자료 검증 및 수정(~6월)</li> <li>○ 현장실사(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 협조</li> </ul> </li> </ul>	<p>(상) ~매년 7월 (하) ~매년 1월</p>
공시완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공시(~2월 15일, ~8월 15일)</li> <li>○ 본 공시(2월, 8월 말일)</li> </ul>	<p>(상) 매년 8월 (하) 매년 2월</p>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절차



## 제2절

## 조사항목 및 공시항목

### 1. 조사항목

-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위한 조사항목은 운송사업자의 일반현황과 교통안전관리 부문의 5개영역-11개 항목, 교통안전실태 부문의 2개영역-4개 항목으로, 총 7개영역-15개 항목으로 구성됨

#### 1.1 업체의 일반현황

구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업체 현황	일반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시작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유무 등
	등록대수/보유대수	○ 사도자사에 등록된 차량대수 및 현 보유대수(차량정보 포함)
	운전자수	○ 평가기준일 재직 중인 운전자수(운전자정보포함)

#### 1.2 교통안전관리 부분

조사영역	조사항목	조사내용
교통안전 조직	교통안전 관리조직 구성	교통안전 관리조직도 및 임무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교통안전담당자 유형과 활동
운전자 관리	입·퇴사 운전자 관리	입퇴사 운전자 신고여부
	적격 운전자 비율	버스 운전 자격 보유 및 유지 여부
	운전자 교육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
차량점검 및 관리	차량점검 및 관리	차량정기검사 수검 및 적합여부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 및 신차보급율
운행관리	운행기록자료 제출	운행기록자료 공단 제출 횟수 및 차량대수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운행기록자료상 위험운전행동 건수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 관리대장	교통사고 기록관리 및 원인분석 여부
	중대사고 발생 보고	중대사고 발생시 지자체 보고여부



### 1.3 교통안전실태 부분

조사영역	조사항목	조사내용
교통 사고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사고 건수 및 심각도
	산재보험요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산재보험요율 - 운수업체별 보험요율(공제조합, 손보사 자료)
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건수	재직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
	행정처분내역	지자체의 행정처분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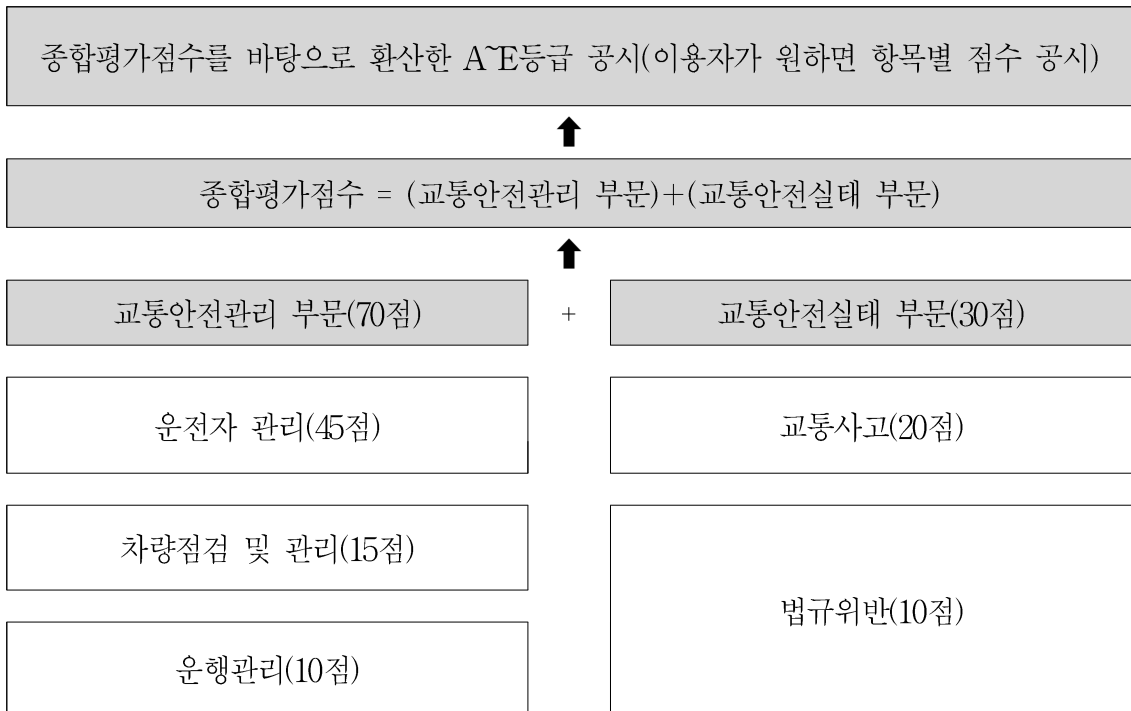
## 2. 공시항목

○ 공시영역, 공시항목,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부문	공시영역	공시항목	평가기준
교통 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입·퇴사 운전자 관리	○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7일이내
		적격 운전자 비율	○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 버스자격 취득 및 취소 여부 ○ 면허취소 및 정지 여부
		운전자 교육	○ 연간 법정교육(신규 및 보수) 참석 비율 ○ 8주 이상 사고자 체험교육 참석 비율
	차량 점검 및 관리	차량점검 및 관리	○ 차량정기검사 수검 비율 ○ 차량정기검사 적합 비율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 ○ 신차보급율(차령 6년 이내)
	운행 관리	운행기록자료 제출	○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 제출된 운행기록계 자료 분석을 통한 위험도 산출	
교통 안전 실태	교통 사고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수 현황을 토대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산재보험요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출한 산재보험요율
	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건수	○ 재직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 3. 공시체계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위해 **교통안전관리** 부문과 **교통안전실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70:30의 가중치로 합산한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최종점수로 분류된 평가 등급을 공시
  - 평가부문-평가영역-평가항목 순으로 구성
  - 교통안전관리 부문은 운전자 관리, 차량점검 및 관리, 운행관리 영역에 대해 평가
  - 교통안전실태 부문은 교통사고, 법규위반 영역에 대해 평가
- 평가결과는 운송사업자의 지역, 업체명과 함께 ①**종합평가 등급**, ②**영역별,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시함



## 제3절 평가 및 배점방법

### 1. 용어의 정의

- **배점**은 전체지표 중 해당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에 부여된 값으로 해당 평가지표가 만점으로 평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의미
- **평점**은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를 만점으로 표시한 점수로서, 평가기준에 정의된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함
  - 평가지표의 평점은 10%미만이 되거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둘 이상의 별도의 평점산식을 합산하여 지표의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산식의 평점은 10% 미만이 되거나 각 산식에 부여된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득점**은 평가지표의 배점에 평점을 곱하여 산출된 평가점수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 **실적치**란 해당 평가기관의 반기 실적을 의미함
- **상향지표**는 실적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 **하향지표**는 실적치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 **최고목표**는 평가지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를 의미하며, 실적이 최대목표보다 같거나 좋은 경우 평점은 100점 적용
- **최저목표**는 평가지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목표를 의미하며, 실적이 최소목표보다 같거나 나쁜 경우 평점은 10점 적용

## 2. 평가원칙

### 2.1 평가 원칙

- 평가 항목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자율등록포함), 현장실사로 평가수행
- 평가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법을 적용함
-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 서류(또는 시스템 등록)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항목의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함
-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해당평가내용에 대해 0점 처리함
- 평가대상기간은 매년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구분하고, 매년 8월말일과 2월말일 지난 반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

### 2.2 평가 진행 방식

- 서면평가
  - 공시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스템 사용매뉴얼의 방법에 따라 공시시스템에 서면자료와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함
- 현장실사
  - 평가대상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면평가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작성내용에 대한 확인, 증빙자료 요구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함
  - 현장실사 결과 제출한 서면평가 자료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서면평가 자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평가내용에 대해 0점 처리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음

### 3. 평가방법 및 평점방법

#### 3.1 절대평가

- 평가대상기관 간에 상대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거나 평가 기준(최고 목표 또는 최저 목표)에 따라 절대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적용하며, 평가항목별 산식에 따라 산출된 결과를 그대로 평점화하거나 별도기준에 의해 평점을 부여함
- 평가기준이 되는 최고 목표(또는 최저목표)는 지표성격 등을 고려하여 ①이론상 최고·최저치, ②과거실적을 기준으로 통계분포에 의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통계분포를 통해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산출할 때에는 상향·하향 지표성격에 따라 다음의 산출식을 통해 평점을 부여하거나, 10등급 기준의 절대 기준값을 제시하여야 함
  - 단, 최고목표(또는 최저목표)에 해당하는 실적치가 특정 평가대상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기인하거나 결과에 중대한 불균형을 야기할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제외한 차상위(차하위) 실적을 최대·최소 목표로 설정하며, 극단치를 나타낸 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최대·최소 목표에 해당하는 기관에 준하는 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 극단치 여부는 평가단에서 통계적 방법론에 의해서 판단하며, 항목의 성격과 발생원인을 고려하여 결정함
- 실적이 최고목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의 평점을 적용하고, 실적이 최저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0점의 평점을 적용함

1. 실적치가 높아질수록 개선되는 평가항목(상향지표) 평점방법

$$= (10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90 \text{점}$$

2. 실적치가 낮아질수록 개선되는 평가항목(하향지표) 평점방법

$$= (100 - \frac{\text{실적} - \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 - \text{최고목표}}) \times 90 \text{점}$$

- 10등급 기준의 절대 기준값을 제시할 때에는 평균, 표준편차 등을 적용하여 분포에 따른 등급 기준을 마련하며, 상향·하향 지표 성격에 따라 값이 클수록(또는 작을수록) 우수한 운수회사로 판단됨에 따라  $m \pm 2\sigma$  이상(또는 이하)의 점수(지수)를 받은 운수회사를 최고등급인 A로 판단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A~J등급으로 구분 가능하며, 등급별 세부 기준과 평점은 다음과 같음
  - 다만, 평가항목에 따라 평균이 최소값(또는 최대값)에 치우쳐 있어,  $m - 2\sigma$ (또는  $m + 2\sigma$ )값이 최소값(또는 최대값)을 넘어가거나, A등급(또는 J등급)이 최소값(또는 최대값)에 근사하지 못할 때에는 위의 A~J 등급 기준에서 표준편차 차이 간격을 평가단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론상 최고·최저 목표치가 있는 값은 해당 값을 A등급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등급에 대한 등급간격을 조정할 수 있음

1. 실적치가 낮아질수록 개선되는 평가항목(하향지표) 등급 기준					
등급	기준	평점	등급	기준	평점
A	$m - 2\sigma$ 이하	100	F	$m$ 초과, $m + 0.5\sigma$ 이하	50
B	$m - 2\sigma$ 초과, $m - 1.5\sigma$ 이하	90	G	$m + 0.5\sigma$ 초과, $m + \sigma$ 이하	40
C	$m - 1.5\sigma$ 초과, $m - \sigma$ 이하	80	H	$m + \sigma$ 초과, $m + 1.5\sigma$ 이하	30
D	$m - \sigma$ 초과, $m - 0.5\sigma$ 이하	70	I	$m + 1.5\sigma$ 초과, $m + 2\sigma$ 이하	20
E	$m - 0.5\sigma$ 초과, $m$ 이하	60	J	$m + 2\sigma$ 초과	10

2. 실적치가 높아질수록 개선되는 평가항목(상향지표) 등급 기준					
등급	기준	평점	등급	기준	평점
A	$m + 2\sigma$ 이상	100	F	$m - 0.5\sigma$ 이상, $m$ 미만	50
B	$m + 1.5\sigma$ 이상, $m + 2\sigma$ 미만	90	G	$m - \sigma$ 이상, $m - 0.5\sigma$ 미만	40
C	$m + \sigma$ 이상, $m + 1.5\sigma$ 미만	80	H	$m - 1.5\sigma$ 이상, $m - \sigma$ 미만	30
D	$m + 0.5\sigma$ 이상, $m + \sigma$ 미만	70	I	$m - 2\sigma$ 이상, $m - 1.5\sigma$ 미만	20
E	$m$ 이상, $m + 0.5\sigma$ 미만	60	J	$m - 2\sigma$ 미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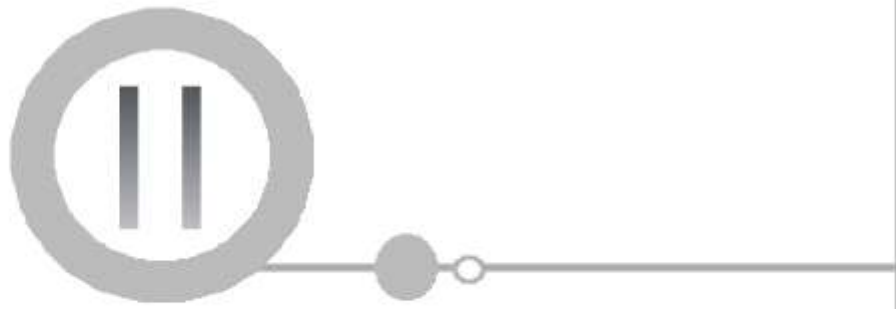
### 3.2 상대평가

- 상대평가는 평가대상 업체의 실적을 동일업종 내에서 상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항목에 적용함
- 평가항목별로 실적이 가장 높은 업체의 평점을 최대(100점)로 설정하고, 가장 낮은 업체의 평점을 최소(10점)로 설정하여 해당 업체의 산출 값과 상대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

$$\text{평점방법} = \left(100 - \left(\frac{\text{그룹내 최고 실적} - \text{평가기관 실적}}{\text{그룹내 최고 실적} - \text{그룹내 최저 실적}}\right) \times 90\right) \text{점}$$

### 4. 감점 사항

- 공시계획(매 공시마다 별도 통보)에서 지정한 자료제출 완료 기간 이후 평가자료(추가자료 포함)를 제출할 경우, 최종평가 점수에서 지연일수 1일마다 0.5점씩 감점함
- 공시계획에서 지정한 ‘이의신청 만료일’ 이후 제출자료는 평가하지 않음



## 공시항목 및 평가기준



## 제1절

### 공시항목 및 배점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 배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수록하며, 절차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 부문	평가 영역	평가항목	배 점	항목특성	
교통 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1. 입·퇴사 운전자 관리	5	상향지표	
		2. 적격 운전자 비율	15	상향지표	
		3. 운전자 교육	15	상향지표	
		소 계	<b>35</b>		
	차량 점검 및 관리	1. 차량 점검 및 관리	10	상향지표	
		2.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	5	상향지표	
		소 계	<b>15</b>		
	운행 관리	1. 운행기록자료 제출	10	상향지표	
		2.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10	하향지표	
		소 계	<b>20</b>		
	<b>합 계</b>			<b>70</b>	
	교통 안전 실태	교통 사고	1.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5	하향지표
2. 산재보험요율			5	하향지표	
소 계			<b>20</b>		
법규 위반		1. 교통법규 위반건수	10	하향지표	
<b>합 계</b>			<b>30</b>		

## 제2절

### 세부평가기준

#### 1. 교통안전관리 부문

##### 1.1 운전자관리

###### 1.1.1. 입·퇴사 운전자 관리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통보)에 따라 입·퇴사 운전자 보고 준수여부를 평가		
배 점	○ 5점		
평가주기	○ 반기(6개월)	항목특성	○ 상향 지표
평가 기준일	○ 운수종사자의 신규채용일과 퇴직일의 기간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평가내용 (평가산식)	○ 입·퇴사 운전자 발생일 7일 이내 보고 미준수자의 수 - 입·퇴사 운전자 발생일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미준수자의 합		
평점부여 방법	$= 5점 - \sum \text{미준수자} \times (0.5점)$ ※ 평가대상기간동안 입·퇴사 운전자가 없는 경우 평점 5점 ※ 평점 결과 1점 이하이면 평점 1점 부여 ※ 퇴직미보고 발생 업체는 소명자료 확인 후 미감점		
항목구성 내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퇴사 보고되어 있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함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입·퇴사 발생일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날짜 비교 후 7일 초과여부 판단 ○ 입·퇴사 보고업무를 조합에서 대신 수행할 경우, 조합이 7일 이내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에서 조합에 보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이메일, 팩스 등 기록)		

1.1.2. 적격 운전자 비율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따라 적격 운전자 보유 여부에 관한 평가		
배 점	○ 15점		
평가주기	○ 반기(6개월)	항목특성	○ 상향지표
평가 기준일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평가내용 (평가산식)	○ 부적격 운전자 수 - 재직 중인 운전자 중 부적격 운전자 수의 합		
평점부여 방법	○ 15점 - ∑ 부적격 운전자수 × (3점) ※ 평가대상기간동안 부적격 운전자가 없는 경우 평점 15점 ※ 평점 결과 0점 이하이면 평점 1점 부여		
항목구성 내용	○ 부적격 운전자 기준 - 평가대상기간 동안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미수검사 - 버스자격 미취득자 및 취소자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 - 그 외 법에서 정한 사유 ○ 운전자의 개인차량 운전 시 발생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는 제외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운수적성정밀검사, 버스자격시험 시스템)		

1.1.3. 운전자 교육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중대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라 법정 의무 교육 참석 여부 평가																																															
배 점	○ 15점 - 신규교육 대상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5점 -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5점 - 8주 이상 사고자 체험교육 참석 여부 5점																																															
평가주기	○ 신규(6개월), 보수(1년) ○ 체험교육 반기(6개월)	항목특성	○ 상향 지표																																													
평가 기준일	○ 보수 1년 평가 : 평가시행전년도 1월1일~12월31일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평가내용	○ <b>평가시행 전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b> (지자체 또는 연수원 수료자 명단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4의3에 따르는 신규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및 교통안전법에 따르는 체험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평점부여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등급</th> <th>신규교육(100점)</th> <th>보수교육(100점)</th> <th>체험교육(100점)</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10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td> </tr> <tr> <td>2등급(9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td> </tr> <tr> <td>3등급(8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td> </tr> <tr> <td>4등급(7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td> </tr> <tr> <td>5등급(6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td> </tr> <tr> <td>6등급(5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td> </tr> <tr> <td>7등급(4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td> </tr> <tr> <td>8등급(3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td> </tr> <tr> <td>9등급(2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td> </tr> <tr> <td>10등급(10점)</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td> <td><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td> </tr> </tbody> </table>				등급	신규교육(100점)	보수교육(100점)	체험교육(100점)	1등급(10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	2등급(9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	3등급(8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	4등급(7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	5등급(6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	6등급(5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	7등급(4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	8등급(3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	9등급(2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	10등급(1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
등급	신규교육(100점)	보수교육(100점)	체험교육(100점)																																													
1등급(10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100%																																													
2등급(9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90%이상																																													
3등급(8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80%이상																																													
4등급(7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70%이상																																													
5등급(6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60%이상																																													
6등급(5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50%이상																																													
7등급(4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40%이상																																													
8등급(3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30%이상																																													
9등급(2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이상																																													
10등급(10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20%미만																																													
항목구성 내용	○ 법정교육(신규, 보수, 체험) 및 8주 이상 사고자 체험교육 이수 대상자 대비 이수자 비율로 평가함 - 보수교육 대상자는 평가년도 1년 모두 재직 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발적 체험교육 참석 운송사업자는 3점 가점 부여 - 평점 15점을 초과할 경우 15점 부여 ※ 교육 이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1등급 부여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지자체, 교통연수원, 조합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																																															

## 1.2 차량점검 및 관리

### 1.2.1. 차량점검 및 관리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차량정기검사 수검 여부 및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비율을 통해 평가대상기관의 교통안전관리 정도 평가		
배 점	○ 10점 - 차량정기검사 수검 차량비율 5점 - 차량정기검사 적합 차량비율 5점		
평가주기	○ 반기(6개월)	항목특성	○ 상향지표
평가 기준일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 1일 ~ 6월 30일기간내 검사만료일이 속하는 차량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기간내 검사만료일이 속하는 차량		
평가내용 (평가산식)	○ 차량정기검사 수검비율 = $\frac{\text{정기검사 수검 차량대수}}{\text{정기검사 대상 차량수}} \times 100\%$ ○ 적합 판정 차량비율 = $\frac{\text{적합 판정 차량대수}}{\text{정기검사 수검 차량대수}} \times 100\%$		
평점부여 방법	○ 차량정기검사 수검비율 평점방법은 차량정기검사 수검비율 (%)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배점(5점) 기준으로 환산 ※ 차량정기검사 수검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평점 1점 부여 ○ 적합 차량비율 평점방법은 적합 차량비율(%)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배점(5점) 기준으로 환산 ※ 적합 차량비율 10%미만인 경우 평점 1점 부여		
항목구성 내 용	○ 차량정기검사 만료일이 평가기준일 기간내에 속하는 차량 중에서 수검을 완료한 차량대수 비율 ○ 적합 판정 차량이란 자동차 검사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의미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적합 차량대수를 산정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 등록된 검사일과 검사결과 자료		

1.2.2.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및 신차 보급을 통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을 평가		
배 점	○ 5점(차로이탈경고장치 3점, 신차보급을 2점)		
평가주기	○ 반기(6개월)	항목특성	○ 상향지표
평가 기준일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6월 30일까지 장착된 차량대수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2월 31일까지 장착된 차량대수		
평가내용 (평가산식)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점수 $= \frac{\text{대형승합차 장착대수}}{\text{대형승합차대수}} \times 100\text{점}$ ○ 신차보급을 점수 $= \frac{\text{차령 6년 이내 차량대수}}{\text{총차량대수}} \times 100\text{점}$ ○ 가점 : 중형승합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 $= \frac{\text{중형승합차 장착대수}}{\text{중형승합차대수}} \times 10\text{점}$ ※ 보유차량대수는 상반기는 6월 30일 기준, 하반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함		
평점부여 방법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배점(3점) 기준으로 환산 ○ 신차보급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배점(2점) 기준으로 환산 ○ 중형승합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에 대해 10점 기준으로 하여 가점(1점) 기준으로 환산 ○ 대형승합차가 0대인 경우 대형승합차 모두 장착(100점) 인정 ○ 신차보급을 차령 산정은 공시 평가 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교통안전 투자 노력 평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할 경우 5점 부여		
항목구성 내용	○ 첨단안전장치 장착률은 <b>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와 신차보급율에 따라 평가</b> ※ 중형승합차의 경우 ADAS(첨단운전보조장치) 기능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 실적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으로 인정함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첨단 안전장치 장착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지자체 지원금 현황, 장착사진 등 제출증빙자료 활용 - 영상기록장치의 경우 제품모델명 및 설명서 추가 제출		

### 1.3 운행관리

#### 1.3.1. 운행기록자료 제출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따른 운행기록계(DTG) 자료 제출 실적을 통해 평가대상기관의 교통안전관리 정도 평가 ※ 주기적 제출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운행기록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 정도가 높다고 평가		
배 점	○ 10점		
평가주기	○ 반기(6개월)	항목특성	○ 상향지표
평가 기준일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평가내용 (평가산식)	○ 운행기록계 제출율 = $\frac{\text{월별 DTG제출대수합계}}{\text{평가기간월별 차량보유대수합계}} \times 100\%$ ※ 최소 1일 이상 운행기록이 있는 DTG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 대수로 인정 (보유기간 10일 미만 차량 제외)		
평점부여 방법	○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평점방법은 운행기록계 제출율(%)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배점(10점) 기준으로 환산 ※ 운행기록계 제출실적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평점 1점 부여 ※ 지자체에서 승인한 휴업(번호판 반납)으로 운행중지한 차량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 6개월 미만 업체의 경우 평점에 운영기간 비율(n/6) 곱하여 산정함		
항목구성 내용	○ DTG제출대수는 지자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eTAS)에 제출한 차량대수를 의미 ○ 최소 1일이상의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한 것만 제출로 인정 ※ 평가기준일 내 제출된 차량번호의 중복은 제외 ○ DTG 고장 및 위탁업체 송신 오류 등으로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 지자체 제출증빙자료 활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활용		

1.3.2.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차량 운행기록계(DTG)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운전행동이 적은 운송사업자의 예상되는 교통사고발생이 적은 것으로 평가																									
배 점	○ 10점																									
평가주기	○ 반기(6개월)	항목특성	○ 하향지표																							
평가 기준일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평가내용 (평가산식)	○ 위험도 산출 = $\frac{\text{주행중 위험운전행동 총합(건)}}{\text{주행거리(km)}} \times 100(km)$																									
평점부여 방법	○ 운행기록계 위험도 평점을 배점(10점) 기준으로 환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종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행기록계 위험도 ≤ 5.4</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최종평점 = 위험도평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4 &lt; 운행기록계 위험도 ≤ 14.3</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3 &lt; 운행기록계 위험도 ≤ 23.2</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2 &lt; 운행기록계 위험도 ≤ 32.1</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2.1 &lt; 운행기록계 위험도 ≤ 49.9</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9.9 &lt; 운행기록계 위험도 ≤ 58.8</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8.8 &lt; 운행기록계 위험도 ≤ 67.7</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7.7 &lt; 운행기록계 위험도 ≤ 76.6</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6.6 &gt; 운행기록계 위험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body> </table> <p>※ 2019년 전세버스 운행기록계 위험도자료의 이상치를 제거한 평균(m), 표준편차(σ) 통계분포를 통해 8등급의 절대 기준값 제시                  ※ 평균 40.98건/100km, 최대값 90.34건/100km, 최소값 4.19건/100km 표준편차 17.81건/100km</p>			기준	평점	최종평점	운행기록계 위험도 ≤ 5.4	100	최종평점 = 위험도평점	5.4 < 운행기록계 위험도 ≤ 14.3	90	14.3 < 운행기록계 위험도 ≤ 23.2	80	23.2 < 운행기록계 위험도 ≤ 32.1	70	32.1 < 운행기록계 위험도 ≤ 49.9	60	49.9 < 운행기록계 위험도 ≤ 58.8	50	58.8 < 운행기록계 위험도 ≤ 67.7	40	67.7 < 운행기록계 위험도 ≤ 76.6	30	76.6 > 운행기록계 위험도	10	
기준	평점	최종평점																								
운행기록계 위험도 ≤ 5.4	100	최종평점 = 위험도평점																								
5.4 < 운행기록계 위험도 ≤ 14.3	90																									
14.3 < 운행기록계 위험도 ≤ 23.2	80																									
23.2 < 운행기록계 위험도 ≤ 32.1	70																									
32.1 < 운행기록계 위험도 ≤ 49.9	60																									
49.9 < 운행기록계 위험도 ≤ 58.8	50																									
58.8 < 운행기록계 위험도 ≤ 67.7	40																									
67.7 < 운행기록계 위험도 ≤ 76.6	30																									
76.6 > 운행기록계 위험도	10																									
항목구성 내용	○ 위험운전행동은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회전(좌·우·유턴), 급앞지르기, 급진로변경 총 11가지 항목을 의미함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활용																									



## 2. 교통안전실태 부문

### 2.1 교통사고

#### 2.1.1.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결과와 관련되는 <b>교통사고의 발생건수와 사상정도</b> 를 통해 평가대상기관의 교통안전실태 평가		
배 점	○ 15점		
평가주기	○ 반기(6개월)	항목특성	○ 하향지표
평가기준일	○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 전년도 6월 1일 ~ 11월 30일 ○ 자동차 면허대수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6월의 차량 면허대수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7월~12월의 차량 면허대수		
평가내용 (평가산식)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frac{(\text{교통사고 발생건수} \times 0.4) + (\text{교통사고 사상자 수} \times 0.6)}{\text{면허대수}} \times 10$ $= \frac{0.4 (1.0 \text{ 사망건수} + 0.7 \text{ 중상건수} + 0.3 \text{ 경상건수}) + 0.6 (1.0 \text{ 사망자수} + 0.7 \text{ 중상자수} + 0.3 \text{ 경상자수})}{\text{면허대수}} \times 10$ ※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 ※ 면허대수 변경시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산출식 그대로 적용 $\frac{\text{변동 전 ( 교통사고 발생건수 } \times 0.4 \text{ ) + ( 교통사고 사상자 수 } \times 0.6 \text{ )}}{\text{변동 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times 10 +$ $\frac{\text{변동 후 ( 교통사고 발생건수 } \times 0.4 \text{ ) + ( 교통사고 사상자 수 } \times 0.6 \text{ )}}{\text{변동 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 법률근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2012년 9월 7일 개정)		

평점부여 방 법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평점방법	
	기준	평점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0	100
	$0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leq 0.04$	90
	$0.04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leq 0.14$	80
	$0.14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leq 0.24$	70
	$0.24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leq 0.34$	60
	$0.34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leq 0.44$	50
	$0.44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leq 0.64$	40
	$0.64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leq 1.04$	30
	$1.04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leq 1.84$	20
$1.84 >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0	
※ 2017년 전세버스 교통안전평가지수(0인 업체 제외) 자료의 평균( $m$ ), 표준편차( $\sigma$ ) 통계분포를 통해 10등급의 절대 기준값 제시 ※ 평균 0.24, 최대값 7.0, 최소값 0.02 표준편차 0.2		
항목구성 내 용	○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는 매년 상반기(1월~5월)와 하반기(7월~11월)로 구분하여 평가시행 이전 반기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를 의미함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경찰청과 연계된 교통사고 발생 정보 자료 활용 ※ 경찰조사결과 교통사고 기록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정 공시함	

2.1.2. 산재보험요율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가대상기관의 산재보험요율을 통해 교통안전실태 평가		
배 점	○ 5점		
평가주기	○ 1년	항목특성	○ 하향지표
평가 기준일	○ 평가시행 전년도(통지는 평가시행년도)		
평가내용 (평가산식)	○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한 운수회사별 산재보험요율		
평점부여 방법	○ 보험요율 평점방법		
	평가평점	평가기준	
	100점	산재최종적용요율 ≤ 20.1%	
	80점	20.1% < 산재최종적용요율 ≤ 21.9%	
	60점	21.9% < 산재최종적용요율 ≤ 23.7%	
	40점	23.7% < 산재최종적용요율 ≤ 25.5%	
	20점	25.5% > 산재최종적용요율	
	※ 매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하는 일반요율에 따라 평가기준은 재산정할 수 있음		
항목구성 내용	○ 산재보험요율은 평가대상 운수회사의 평가년도 산재보험요율을 의미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한 산재보험요율		

## 2.2 법규위반

### 2.2.1.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재직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를 통해 평가대상기관의 교통안전실태 평가		
배 점	○ 10점		
평가주기	○ 반기(6개월)	항목특성	○ 하향지표
평가기준일	○ 상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1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평가 : 평가시행년도 6월 1일 ~ 11월 30일		
평가내용 (평가산식)	○ 재직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 재직운전자가 전세버스 운전 시 교통법규 위반건수의 합		
평점부여 방 법	= 10점 - ∑ 교통법규위반건수 × (1점) ※ 평가대상기간동안 교통법규위반건수가 없는 경우 평점 10점 ※ 평점 결과 0점 이하이면 평점 1점 부여		
항목구성 내 용	○ 분기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직 운전자의 도로 교통법 위반건수에 대한 자료 ○ 운전자의 개인차량 운전시 적발된 교통법규위반사항은 제외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자료 활용(경찰청 데이터 연계주기 1일)		

### 제3절

### 공시등급

- 전세버스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137호)의 제12조(평가등급)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등급	상 태	점수
1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우수하고, 교통안전 확보 노력이 모범적인 상태	90점이상
2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양호하고, 교통안전 확보가 양호한 상태	90점미만 80점이상
3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보통이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부분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	80점미만 70점이상
4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저조하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태	70점미만 60점이상
5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저조하여 교통안전확 보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교통안전정보 공시 불응 상태	60점미만



**별지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재평가 요청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본 운수회사는 아래와 교통안전정보 예비공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기에 재평가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1. 운수회사명 :
2. 재평가 항목 :
3. 재평가 사유 :

붙임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예비공시 결과서 1부.

20 . . .

[별지 제2호 서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예비공시 결과서

1. 개 요

운송사업자명 (주소)		공시등급	_____등급
----------------	--	------	---------

2.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표

평가항목	가중치(A)	평가평균(B)	배점(A×B)	산출근거
① 입·퇴사 운전자관리	5			
② 적격 운전자 비율	15			
③ 운전자 교육	15			
④ 차량점검 및 관리	10			
⑤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	5			
⑥ 운행기록자료 제출	10			
⑦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	10			
⑧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5			
⑨ 산재보험요율	5			
⑩ 교통법규위반건수	10			
계	최종점수 (100점 만점)	100		

산출근거

1. 평점 산출 근거를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1. 개 요

운송사업자명 (주소)		공시등급	_____등급
----------------	--	------	---------

2.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표

평가항목	가중치(A)	평가평균점(B)	평가등급	배점(A×B)	비고
① 입·퇴사 운전자관리	5				
② 적격 운전자 비율	15				
③ 운전자 교육	15				
④ 차량점검 및 관리	10				
⑤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	5				
⑥ 운행기록자료 제출	10				
⑦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	10				
⑧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5				
⑨ 산재보험요율	5				
⑩ 교통법규위반건수	10				
계	최 종 점 수 (100점 만점)	100			

비고

1. 기본점수(10점), 항목별 평균점수, 미제출 여부 등을 표기할 수 있다.